

## 강원도립대학교 겸임교원 임용규정

(제정) 1998-11-23 규정 제039호  
(개정) 2001-04-26 규정 제110호  
(개정) 2008-10-21 규정 제194호  
(개정) 2010-05-03 규정 제243호  
(개정) 2016-04-25 규정 제397호  
(개정) 2017-02-21 규정 제43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18조 제1항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2규정과 관련하여 강원도립대학교 겸임교원(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5.>

제2조(임용구분) 겸임교원은 겸임 전임강사, 겸임조교수, 겸임부교수, 겸임교수로 구분한다.

제3조(임용자격) 겸임교원은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교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다만, 특별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나 산업체 근무경력 등이 탁월한 자로서 본 대학교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대학 교수 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4.25.>

1. 산업현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현직자
2. 담당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자
3. 학생지도 및 교수능력이 있는 자
4.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있는 자
5. 주당 6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

제4조(신규임용) ① 겸임교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과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할 수 있다.

② 학과장의 추천으로 임용할 경우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추천서류에 의거 임용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교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1. 겸임교수 임용추천서 또는 임용 연장추천서 :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1부
2. 겸임동의서 : 별지 제3호서식 1부
3. 이력서(연구실적 포함)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학력 및 학위증명서 1통
6. 경력증명서 1통

제4조의 1(임용의 시기) 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추천하는 겸임교원은 임용예정 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② 겸임교원의 임용은 매년 3월 1일 및 9월 1일에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5.3〉

제5조(임용기간) ①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겸임교원 임용 연장추천서를 첨부하여 임용연장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임용연장 추천자에 대하여 활동실적 등을 심사한 후 겸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임무 및 복무) ① 겸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강의 또는 실험실습(주당 6시간 이상) 〈개정 2010.5.3〉
2.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3. 졸업생의 취업지도 자문 및 알선
4. 기타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② 겸임교원의 임무와 관련한 복무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보수) 겸임교원의 보수는 겸임수당으로 지급하되 지급시기, 방법,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임용인원의 제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4항에 의거 전임교원정원(조교를 제외한다.)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5.3〉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임교원에 적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용하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1998. 11. 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26)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21)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 3)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25.)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2. 21.)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겸임교원 임용 추천서

<b>1. 인적사항</b>						
성 명				생 년 월 일		
소속 기관명				직 위(직급)		
경 력 사 항	출신학교		입학년월	졸업년월	전 공	학위명
	대 학					
	대 학 원	석 사				
		박 사				
경 력 사 항						
<b>2. 추천내용</b>						
임 용 학 과				임용추천직급	겸임	
부 여 임 무	강의 :                    시간, 공동연구 :                    건, 기타 :					
학 과 교 수 동 의 여 부	학과	직급	성명	인 동의여부(동의, 부동의)		
<p>본 대학 겸임교원으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하오니 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붙임 : 1. 겸임동의서 1부.                  2. 이력서(연구실적 포함)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학력 및 학위증명서 1통.                  5. 경력증명서 1통.</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_____                    학과    학과장                                        <span style="float: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인                     </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p>						



## 겸 임 동 의 서

### 1. 겸임 대상자

소 속		생 년 월 일	
성 명	(한자 )	직 위(직급)	

### 2. 겸임내용

소 속	강원도립대학교 과
부여임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강의 또는 실험실습(주당 6시간 이상)</li> <li>2.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li> <li>3. 졸업생의 취업지도</li> <li>4. 기타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li> </ol>

강원도립대학교 겸임교원 임용규정에 의거 위 자를 귀 대학의 겸임교수로 임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